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2021년 5월 7일 이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공동 서류	서약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자금조달계획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모든 주택형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공고일 현재 혼인중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 만19세 이상 세대원
소득증빙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입양의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비사업자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 서류 추가제출		
	위임장	계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건본주택에 비치
	인감증명서	계약자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계약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대리인 신분증/인장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추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등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